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 보급 의무화 등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01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 보급 의무화 등	2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22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 요소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망 및 질병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성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미세먼지 예측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와 같은 미세먼지 저감·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보건 장비를 보급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 보급 의무화 등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② 어린이집, 학교 등의 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의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생략) <u><신설></u>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u>보호대책 마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지의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 <u>보호대책 마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방법</u> ----- -----.

현행법 제23조¹⁾에서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²⁾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그런데 매년 겨울철·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하여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의 설치 등 보다 세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개정안은 ① 미세먼지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³⁾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1) 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의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⁴⁾사업의 경우 동 법 제3조⁵⁾에 근거하여 2019년 추경이후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 또한 ‘미세먼지 취약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급’⁶⁾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환경미화원, 택배 및 퀵서비스업 등 옥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KF94마스크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용 마스크 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일반회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2639-30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46만명에게 1인당 50매씩 지급

5) 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자건강보호(4152-353)

- (옥외근로자마스크지원) 미세먼지법 시행(‘19.2.15)에 따라 미세먼지 노출이 심한 옥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마스크 보급) 지속실시

급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既시행중에 있으므로, 보건용 마스크 보급과 관련하여서도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재량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⁷⁾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미세먼지 방지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 보급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85억 8,900만원(연평균 177억 1,800만원) 이상의 추가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추계하였음.

[보건용 마스크 무상 보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26~2030)]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수 (A, 명)	2,658,720	2,654,878	2,651,032	2,647,125	2,643,090	—
1인당 보급수량(B, 매)	25	25	25	25	25	—
마스크 구입단가 (C, 원/매)	256.9	262.0	267.3	272.6	278.0	—
마스크 무상보급비용 (D=A×B×C, 백만원)	17,074	17,390	17,712	18,040	18,373	88,589
- 국비(D×50%)	8,537	8,695	8,856	9,020	9,186	44,295
- 지방비(D×50%)	8,537	8,695	8,856	9,020	9,186	44,295

주: 1. 보건용 마스크 무상보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
 2. 1인당 보급수량은 최근 3년(2021~2023년)간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나쁨 이상 일수(23.0일)에 여유분 10%를 적용하여 산출
 3. 보건용 마스크는 KF-94 이상 규격에 배송비 및 포장비,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
 4. 국비 및 지방비 부담률은 각 50%로 가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환경부 의견

둘째,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의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⁸⁾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9)에 따라 공기 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9) 「학교보건법」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문 의 처
02)6788-5536